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3014(2024.03.29~2025.12.31)

『외화자유적립예금』 핵심 상품설명서

▸ 기본정보

상품특징	• 외화의 자유적립과 한정된 횟수의 분할 인출이 가능한 예금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통화	• USD, JPY, EUR, CAD, GBP, AUD, SEK	
가입금액	• 초입금 미화 5백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 3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적용금리	• 가입(추가적립)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외화정기예금 금리 적용 (적립금 단위)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거주자)	
예금자보호	○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 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이율	• 가입(추가적립)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기간	중도해지이율	기간	중도해지이율
7일 미만	무이자	3개월 이상 경과분	약정이율의 4/10
7일 이상 1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1/10	6개월 이상 경과분	약정이율의 5/10
1개월 이상 경과분	약정이율의 3/10	1년 이상 경과분	약정이율의 7/10

※ 약정이율 : 신규일 당시 고시된 외화정기예금 금리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3014(2024.03.29~2025.12.31)

『외화자유적립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외화자유적립예금
- 상품특징 : 외화의 자유적립과 한정된 횟수의 분할 인출이 가능한 예금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제한 없음
가입통화	• USD, JPY, EUR, CAD, GBP, AUD, SEK
상품유형	• 외화정기예금
거래방법	• 신규 및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 초입금 미화 5백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 3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기본이자율</td><td>

• 기본금리 : 가입(추가적립)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외화정기예금 금리 적용(2024.04.01. 세금 납부 전 거주자 기준, 단위: 연 %)

<table>
<tr><th>구분</th><th>1주 미만</th><th>1주 이상</th><th>1개월 이상</th><th>2개월 이상</th><th>3개월 이상</th><th>6개월 이상</th><th>12개월 이상</th><th>24개월 이상</th><th>36개월 이상</th></tr>
<tr><td>USD</td><td>4.0869</td><td>4.2967</td><td>4.8122</td><td>4.8472</td><td>4.8723</td><td>4.8435</td><td>4.5098</td><td>4.0365</td><td>3.7503</td></tr>
</table>

※ 타 통화 및 기간별 금리는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통화별, 기간별 금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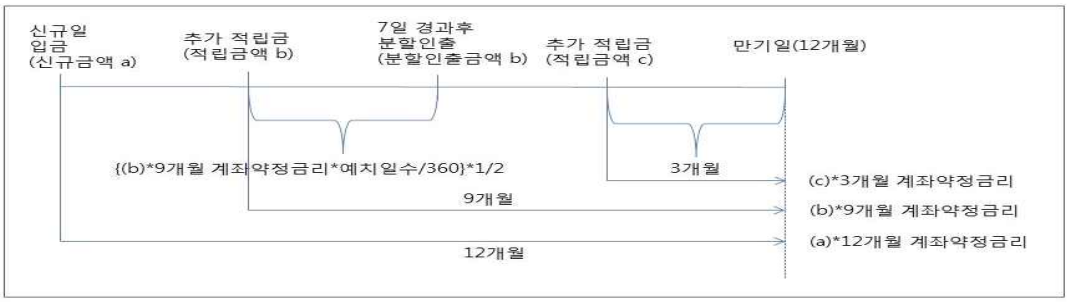

</td></tr>
<tr><td>우대이자율</td><td>• 해당사항 없음</td></tr>
<tr><td>만기후 이자율</td><td>• 입금 건별 약정이율의 3/10</td></tr>
<tr><td>만기이자 산출근거</td><td>

• 가입(추가적립)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추가적립) 시점 당시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이자계산산식] : 납입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0

</td></tr>
<tr><td>중도 해지이자율</td><td>

• 가입(추가적립)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

<table>
<tr><th>기간</th><th>중도해지이율</th><th>기간</th><th>중도해지이율</th></tr>
<tr><td>7일 미만</td><td>무이자</td><td>3개월 이상 6개월 미만</td><td>약정이율의 4/10</td></tr>
<tr><td>7일 이상 1개월 미만</td><td>약정이율의 1/10</td><td>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td><td>약정이율의 5/10</td></tr>
<tr><td>1개월 이상 3개월 미만</td><td>약정이율의 3/10</td><td>12개월 이상</td><td>약정이율의 7/10</td></tr>
</table>

※ 약정이율 : 신규일 당시 고시된 외화정기예금 금리

</td></tr>
<tr><td>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td><td>

• 계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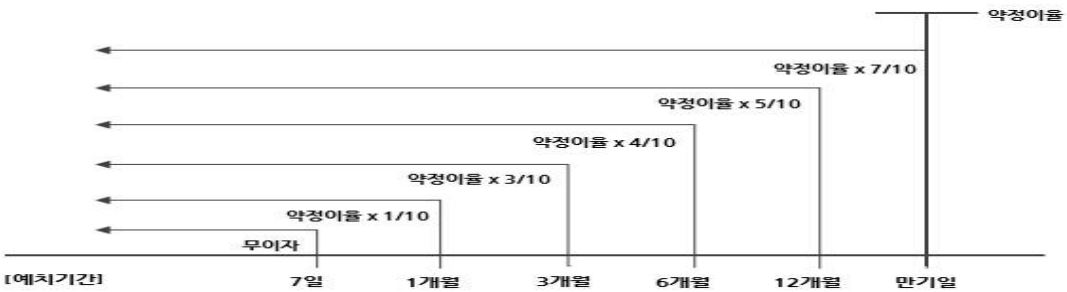

※ 위 그림은 적용율, 중도해지개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

</td></tr>
</table>

구 분	내 용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거주자) ※ 적용세율은 2024.04.01.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에 따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불가	• 해당사항 없음
재예치	불가	• 해당사항 없음
부분인출	가능	• 만기 전 3회까지 적립금 단위로 중도인출 가능 • 중도인출 시 적용금리 : 예치기간별 약정금리의 1/2 적용 다만,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 외화보통예금 금리 적용 ※ 2024.04.01. 기준 세금납부 전 미국달러(USD) 외화보통예금 금리 : 연0.01%
양도 및 담보제공	가능	• 계좌 잔액의 90%까지 가능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구 분	내 용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3 유의 사항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외화현찰 또는 대체로 찾으시거나 맡기실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 이 예금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규정」 등 관련 법규(유권해석 포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이 상품은 우리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운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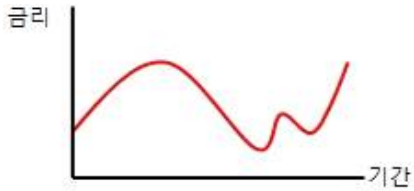
특징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동
장점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수익이 증가
단점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